

## < 수시 공시 >

2013.08.06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	발생일	기준가격	50 억 미만
		설정잔액(원)	순자산총액(원)		시작일
1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A형	1,663,557,020	1,656,878,062	995.99	2012/09/06
2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C2형	3,988,391	3,916,701	982.03	2012/09/06
3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C3형	337,926,298	366,243,926	1083.8	2012/09/06
4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C4형	1,175,363,899	1,307,983,646	1112.83	2012/09/06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3.08.05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http://www.kofia.or.kr), 집합투자업자 (http://www.syfund.co.kr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